

◎ 국가데이터처 고시 제 2026 - 327호

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06월 11일
국 가 데 이 터 처 장

1. 통계의 명칭 : 급여의약품·치료재료청구현황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354004호 [2016.04.18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6.06.29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사유
통계표 (결과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급여 치료재료 청구현황 - 총 14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급여 치료재료 청구현황 - 총 19종 * 신설(9종), 삭제(4종) 	통계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통계 전반의 실효성 제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계표 분류항목 변경 - 종별 청구현황: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별도 표기 - 연령 및 성별 청구 현황: 5세 단위 연령 구분 - 단일년도 실적 표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계표 분류항목 변경 - 종별 청구현황: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합산 표기 - 연령 및 성별 청구 현황: 10세 단위 연령 구분 - 3개년도 실적 및 전년 대비 증감률 표기 	